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479
----------	------

제출연월일: 2025. 10.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대상 및 횟수(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다. 예방접종 기관 및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안 제5조)

라.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안 제6조, 제7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 제8조)

3. 조례제정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기획예산실 사전 협의

(2026년 건강관리과 당초예산 반영 예정)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31432호, 2025. 7. 30.)

라. 입법예고: 2025. 8. 4. ~ 8. 25.(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질병에서 제외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제2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지원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최초 1회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

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진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백신 구입 비용 및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 시 접종 시행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백신 단가 및 시행비 단가 매년 1% 증가 예정
- 접종 목표: 연간 2,600명 ※ 향후 5년간 100% 접종 목표
 - 인플루엔자: 1,800명(14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9,000명의 20%)
 - 대상포진: 800명(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000명의 20%)
-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2026년 신규): 46% 목표('25년 546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지출	인플루엔자	52	52	53	54	54	265
	대상포진 (기초생활수급자)	55	56	56	56	57	280
	대상포진 (차상위계층)	25	16	13	13	12	79
	소 계(a)	132	124	122	123	123	624
수입	소 계(b)	0	0	0	0	0	0
총 비용(a-b)		132	124	122	123	123	624

(기 시행 중) 인플루엔자('1997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접종('2024년~, 시비지원)

(신규 시행 예정)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2026년~)

※ 산정기준('26년): 백신비(인플루엔자 9,660원, 대상포진 81,370원), 시행비(19,610원)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시 비		45	45	46	46	47	229
구 비		87	79	76	77	76	395
합 계		132	124	122	123	123	624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독분	시비						
	일반회계	45	45	46	46	47	229
	구비						
	일반회계	87	79	76	77	76	395
합 계		132	124	122	123	123	624

2. 재원조달방안

- 시비 : 대상포진(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 사업 교부금
- 구비(세외수입) : 간호학과 임상 실습비(5백만원/년), 진료비 수입(55백만원/년)

3. 부대의견

- 해당 없음

4. 협의사항

- (신설)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426(2025. 7. 29.)
- 기획예산실 예산계 협의(건강관리과 예산 편성)

5. 작성자

- 소 속: 건강관리과
- 직 급: 지방간호주사
- 이 름: 서혜진
- 연락처: (052)290-4341